

第12回 市議會 臨時會

1995. 11. 6 ~ 11

시정質問에 대한 答辯書

('95. 11. 10)

龜 尾 市

목 차

연번	질문의원	질 문 요 지	답 변 자	페 이 지
1	강 형 구	○ 시정기획단에 관한 사항 및 일용직 근무자 급여에 관하여	시 총 무 국 장	131
2	곽 용 기	○ 자연보호 표적비 건립과 사회진흥과명 변경 및 강변도로와 국도 33호선의 연결문제, 부시장실·국장실 이전에 관하여	총 무 국 장 건 설 국 장	137
3	박 수 정	○ 하수도 정비 및 도시계획 재정비에 관련하여	도시계 획 국 장 건 설 국 장	143
4	박 기 홍	○ 아파트 건축시 소음공해에 관련하여	도시계 획 국 장	147
5	박 수 봉	○ 동우3차아파트 건설중 부도와 관련한 피해주민 구제대책과 관련하여	도시계 획 국 장	153
6	박 영 환	○ 무허가건축물, 쓰레기종량제, 시영아파트에 관련하여	총 무 국 장 보 사 환경 국 장 주 택 사업 소 장	159
7	김 병 주	○ 지산농로 2차선으로 확포장 및 도시계획상 도로의 용도변경과 용지보상문제, 국유지 주차장부지로 활용방안에 관한 건	총 무 국 장 도시계 획 국 장 건 설 국 장	169
8	강 명 수	○ 고아 도시계획에 관하여	도시계 획 국 장 (선산출장소)	175
9	한 상 일	○ 입찰에 대한 내부제도 및 금오산 진입로 가로수 개선에 대하여	총 무 국 장 도시계 획 국 장	179
10	임 경 만	○ 구미신문인협회광고 불법영업과 관변단체보조 및 지원운영에 관하여	기 획 실 장 총 무 국 장	185

市政質問에 대한 答辯

☐ 질문자 : 강 형 구 의원

☐ 시청기획단에 관한 사항

☐ 일용직 근무자 급여에 관하여

-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이수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강형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발전기획단에 관한 사항중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시정발전기획단』 설치·운영에 대한 배경,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행정환경도 과거 중앙행정 편의의 기구나 제도의 틀에서 벗어나 지방 특수성이나 시민 본위의 자치발전을 도모해 나가기위한 자구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우리 기존조직이 보다 빠른 시일내에 이러한 행정환경에 적응키 위해 현 조직과 정원의 범위내에서 인원을 차출하여 『시정발전기획단』이라는 작업팀을 구성, 우선 일을 시켰으며 상설 기구화하여 정식 기구조례에 포함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시청 기구조직에 대한 의회에 사전논의를 드리는 절차나 조례안 의회제출에 즈음하여 의논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업무내용으로는 시정전반에 대한 제도와 기구의 개선, 각종 장기개발계획의 전문적 연구, 특수시책개발 등 시장의 정책 개발·결정에 대한 기획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로는 조직개편과 시정발전 시민특별제안 창구 운영, 각종 장기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분석 관리를 하고 있으며 구미시 대외 통상협력 기반구축, 교육환경개선 등 장기개발 과제를 연구하고 있는 등 새로운 특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의 운영은 관련 조례에서 규정되는 대로 정해질 것임이다라는 지금으로서는 만일 기능을 부여한다면 실무부서에서 여건상 심층연구하기 어려운 제반과제들을 체계적이고 분석적으로 연구검토 되도록하여 보다 나은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예를들면 교육환경, 복지제도, 통상정책개발, 구미 이미지업사업 연구등 우리시의 중·장기 과제들을 연구하여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국장 김정욱입니다.

□ 내무위원회 강형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읍면동의 주민등록 전산보조원의 급여차이가 비 현실적인 것에 대한 시의 방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 전산보조원을 고용하게된 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 1989년 주민등록 업무전산화 계획에 의거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민등록사항을 전국 어디에서나 알 수 있도록 온라인망 구성을 위해 관련사항의 입력작업과 수차례의 시험가동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 이러한 중요하고 방대한 국가 시책사업을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업무 담당공무원을 보조할 일용인부를 읍면동의 인구수에 따라 1~2명씩 고용 사역토록 함으로서 주민등록 전산화를 조기에 마무리하여 '94년 5월부터 전국 동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주민등록 인구 수가 10,000명 이상인 송정동 등 9개동에 대하여는 300일 1명과 280일 1명으로 2명을 사역하고, 그외 13개 동은 300일 1명을 사역하고 있으며,

선산출장소 관할인 읍면은 280일 1명씩 통합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역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300일과 280일의 급여의 차이는 일당 16,400원으로서 동일하게 지급되나 300일 이상은 상여금 400 %, 년월차수당,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어 1년간 년 지급액을 계산하면 3,435,800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나 년 지급액이 적은 280일 일용직을 사역하는 8개 읍.면과 9개동의 17명에 대하여는

'93년부터 일용직 증원이 동결되어 예산상 300일 조정으로는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시본청과 출장소 읍.면.동의 300일 일용직증 결원이 발생하게되면 위 대상자를 우선 고용토록 함으로서 사기진작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市政質問에 대한 答辯

□ 질 문 자 : 광 용 기 의원

- 자연보호 표적비 건립과
사회진흥과명 변경
- 강변도로와 국도33호선의
연결문제
- 부시장실.국장실이전에 관하여

□ 총무국장 김정욱입니다.

□ 내무위원회 곽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연보호 표적비 건립과 사회진흥과 명칭 변경 및 부시장실과 국장실 이전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자연보호 표적비 건립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면

자연보호 발상지인 금오산에 자연보호 운동 발상지 표적비를 건립하는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 합니다.

표적비 건립을 위하여 자료조사를 거쳐 신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를 약 35,000천원을 요구 하였으며

설치장소, 비문, 휘호등 관련자료 수집과 여론을 수렴하여 '96. 10. 5.

자연보호헌장선포일에 제막식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그리고 사회진흥과 과명칭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과 명칭변경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됨에 따라 시.군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 규칙으로 표준기구를 정하도록 함에 따라

도 표준기구가 시달되면 도전체의 균형차원에서 도와 협의를 거치고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부시장실과 국장실을 1층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층의 사무실 배치는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원처리가 많은 시민과, 지적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세무과를 배치하였으며, 특히, 장애인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사회과를 1층으로 배치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부시장실과 국장실을 1층으로 옮기는 것은 현재로서는 곤란 하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시장실 이전 및 시민사랑방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민과의 격이없는 대화와 시민의 폭넓은 여론 수렴을 위하여 시장실을 3층에서 1층으로 옮겨 시민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랑방은 시민들의 관심속에 운영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직소 민원실 이용건수가 192건으로 매일 증가 추세에 있어 시정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봅니다.

시장실 이전 및 시민사랑방 설치공사는 '95. 7. 13일 착공, 8. 12일 완료하여 8. 14일부터 정상업무를 시작하였으며 이에 소요된 사업비는 5천만원 정도 입니다.

앞으로 시정 업무 추진에 용이하도록 시청사 유지관리에 힘쓰겠습니다.

□ 곽 용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번째 내용인

- 공단의 강변도로와 국도33호선과 직접 연결하여 교통난 해소에 대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국도33호선과 강변도로를 연결하는 비산우회도로 (중로1류 2호선)는 신평동 사기점에서 1공단 하단부 강변도로까지 총연장 2,650M , 폭 20M로 총사업비는 65억원이 소요되며
-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회 추경에 설계 용역비 45백만원을 확보 용역 발주중에 있으며
- '96년부터 점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市政質問에 대한 答辯

☐ 질문자 : 박수정 의원

☐ 하수도 정비

☐ 도시계획 재정비에 관련하여

□ 박 수 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문하신 금오공대 앞 신평동 168-7번지 외 95 필지 40,000여평의 시설
녹지를 市에서 매입 할 용의 및 도시계획 재정비시 시설녹지를 해제하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서는

-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수출탑 주변 신평, 광평동의 시설
녹지로서 본 지구는 1973년도 구미도시계획구역 확장시 시가지내의 주거,
상업지역과 공업단지, 고속도로등과의 시설간 보호를 위하여 도시계획
시설인 시설녹지로 지정결정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지금까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존치되어 오므로 토지소유자들의
사유권 및 각종 행위에 제한을 받게되는데 대하여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
합니다.
- 그러나 인근 지역여건의 특수성 및 市 재정상 용도지역 변경및 해제하거나
市에서 매입은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 본 지역의 시설녹지 해제는 주민들로부터 수 차례 해제 건의가 있었으며,
또한 금년 3월에도 지역주민들로부터 해제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어 市에서
95. 4. 10 착수한 통합 구미시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업체에 검토토록
하였습니다.

□ 박 수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도 정비 및 도시계획 재정비에 관한 내용중

○ '95. 4월 부터 오·하수가 고이거나 넘쳐흘러 악취를 풍기고 있는 신평시장 앞 국도33호선 도로 상하수도의 미정비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정비 계획과 정비 완료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추진중인 국도33호선 우회도로 구간중 신평시장 앞 하수도 미 설치로 인한 배수불량에 대하여는 년내로 하수도를 설치(L=78M 우수받이 4개소) 정비하겠습니다.

市政質問에 대한 答辯

☐ 질문자 : 박 기 홍 의원

☐ 아파트 건축시 소음공해에
관련하여

□ 다음 박기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파트 건축시 고속도로변의 아파트 소음공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현재 우리시에서도 아파트 건립에 따른 철도변 소음에 대하여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건립함에있어 현행 관계법령인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제9조에 의하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건설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소음 측정기준에 의하여 65dB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철도, 고속도로, 기타 소음발생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벽, 수림대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당해 공동주택건설 지점의 소음도가 65dB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시에도 아파트가 주거조건이 좋은 위치에 건립되면 민원도 없어지고 더없이 좋은것이나, 관계법에 규정된 사항을 우리시에서 임의로 제한하여, 규제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로인한 민원을 시정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도 상부에 적어도 골조공사완료후에 아파트를 분양하여 모델하우스를 짓지 아니하고, 골조완료한 현장 1 층에 모델하우스를 지어 입주민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위치나 자재등을 확인후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수차례 상부기관에 법령개정을 건의하여 아파트위치 및 과대광고에 대한 민원을 없애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번째 질문사항인

- 아파트 사업승인시 소음측정업체의 기준치 이하일 경우 승인을 해주고 있으나, 앞으로 소음측정업체의 측정결과를 가지고 주택과와 환경보호과가 함께 현장확인후 기준치 미만일때 승인을 하여야 한다는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 소음측정은 아무기관이나 아무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며, 소음측정업체는 환경부에 등록된 전문업체의 고유 업무사항으로서 이들 업체의 측정자료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비전문기관인 우리시에서 측정한 기준치로 허가여부를 결정짓는것은 법적으로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우를 범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전문공인기관의 측정을 믿지않을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번째 질문사항인

- 현재 공사중인 송정동 한신아파트와 시영아파트, 사곡동 전원아파트등에 대하여 주택과, 환경보호과가 합동으로 소음도를 재확인하여 기준치를 초과하면 방음벽 설치후에 준공을 해주어야 한다는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 송정한신아파트, 시영아파트, 사곡전원아파트는 철도로부터 50M이상 떨어져 있어, 철도소음에 대한 소음측정은 제외되나 송정한신아파트, 시영아파트는 도로폭 20M이상 도로에 접해 있어 소음측정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시에서 소음측정 확인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려움이 많아 사업 주체에 통보하여 사용검사 신청전에 소음측정업체에 다시 측정을 받아보도록 하여 기준치를 초과하면 방음벽 및 수림대를 설치하여 기준치 이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세번째 질문사항인

- 현재 입주해 살고 있는 철로변 및 고속도로변의 아파트에 소음도를 재측정하여 기준치 초과할 경우 해당 아파트 건축시 소음도 측정 확인을 못한 책임이 있으니, 연차적으로 예산 반영하여 방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 철로변 및 고속도로변의 공동주택 소음측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의거 전문업체에서 측정한 결과치가 65데시벨 미만이 되어 사업승인이 되었으며, 지적하신 소음도 측정은 우리시에서 측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소음 측정시 확인 못한 시의 책임은 없다고 생각되고,
따라서 방음벽 설치도 시의 예산으로 할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번째 질문사항인

- 아런 시행착오를 없애기 위해 상위법의 행정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소음 측정결과 만으로 허가해 주는 것을 현장확인 후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문화 하여야 한다는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없는 사항을 우리시에서 명문화하여 현장확인후 소음도를 측정하여 사업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상위 법을 위배한 더 많은 민원이 따를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부기관에 철도, 고속도로변으로부터 소음측정치에 관계없이 50M이상 떨어져 건립될수 있도록 법령개정시 건의를 하겠습니다.

市政質問에 대한 答辯

☐ 질문자 : 박수봉 의원

○ 동우3차아파트 건설중 부도와
관련한 피해주민 구제대책과
관련하여

□ 다음 박수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파트 건설중 부도와 관련하여 피해주민 구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번째 질문사항인

- 구미지역에 진출해 있는 주택건설업체 현황 및 기업경영 상태에 대해서는
- 구미시 관내에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는 주택건설업체는 12개업체이며, 건립 중인 것은 28개단지 7,193세대 입니다.
- 기업경영 상태는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모든업체가 자금난으로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두번째 질문사항인

- 선량한 주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건설업체 부도예방 대책에 대하여는
- 동우주택과 같은 부도업체로 인하여 아파트를 분양 받은 선량한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파트 분양승인시 주택사업공제조합에서 준공을 이행하는 분양보증 또는 건실한 업체를 보증회사로 세워 분양을 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아파트 신규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업체에 대하여 미분양 현황을 알려주어 사업시 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유도하여 자금난으로 인한 부도가 발생치 않도록하여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하겠습니다.

□ 세번째 질문사항인

- 동우3차아파트 분양시 분양 인가와 보증업체가 없는 상태에서 분양이 이루어짐으로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보는데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그에 따른 사법조치도 취하지 않은것은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는 아닌지에 대하여는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동우 3 차 아파트는 분양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전분양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사전분양에 대해서는 입주민과 사업주체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사항으로 당사자의 제보없이 사전분양을 인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 부도발생 후 입주민들이 시청에 찾아와 분양계약서를 보여 주면서 대책을 요구하여 시에서는 즉시 '95.10.6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및 경북도에 주택사업자 행정처분 요구하였으므로 직무유기를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네번째 질문사항인

- 동우3차아파트 잔여 마무리 공사를 전후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두산주택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두산주택 소유인 광평동 299-2번지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주민들에게 이전 등기를 해 줄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는
- 동우3차아파트 잔여 마무리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구미시와 입주민대표가

두산주택건설과의 몇차례 협의를 하여 두산주택에서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하였으며,

공사재개를 하기 위하여 입주민대표와 두산주택건설이 세부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지소유권을 입주민들에게 이전할 경우 공사재개 시는 주택건설 사업자와 시공자를 선정하여야하므로 오히려 주민들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 소유권이전을 할 경우 공과금인 취득세 및 등록세등과 추가공사비를 주민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두산주택에서 주민들에게 대지소유권 이전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나, 이전에 주었을 경우 두산주택에서는 소유권이전시 부터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공사재개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동우3차 아파트에 대하여 조속히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두산주택과 협의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市政質問에 대한 答辯

☐ 질문자 : 박 영 환 의원

☐ 무허가 건축물

☐ 쓰레기 종량제

☐ 시영아파트에 관련하여

□ 총무국장 김정욱입니다.

□ 형곡동 국유지상 무허가 건물 철거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형곡동 138-3번지 대지 452㎡ (136평)은 '90년 3월 출소자 재활 단체인 오네시모 갱생재활원 소속 구미대원들의 숙소와 출소자 교회를 위한 교회로 조립식 건물 2동 41평을 건립하여 현재 16명의 출소자가 기거 중이며 이들은 공단기업체 일용근로자 및 건축공사장의 막노동으로 출역하며 재활의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후 오네시모 재활원장 이승윤의 구속으로 본 재활원은 와해 되었으며 수차례 무허가건물 철거를 시도하였으나 재활원의 와해로 구심점을 잃은 재소자 들의 저항이 완강하였습니다.

법질서확립 차원에서 당연히 강제철거 하여야 하나 출소자에 대한 주거 대책과 철거후 재범등 사회불안이 우려 되므로

출소자에 대한 집단주거지 확보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후에 철거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어 여러가지 대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 도시건설위원회 박 영 환 의원님께서 쓰레기종량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쓰레기종량제 실시후 쓰레기감소량은

-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되기전 '94년도 쓰레기 발생량은 일일평균 448톤이었으나, 실시후 일일평균 발생량이 277톤으로 38%가 감소되었습니다.

○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전보다 실시후 수수료수입이 많은 것은 시민의 부담이 늘어난 것이며 이에 따른 불만해소 대책은

- 쓰레기 종량제는 날로 늘어나는 쓰레기로 인한 환경문제와 막대한 처리비를 원인자 부담으로 전환하여 쓰레기를 줄이도록 하는 제도로써 2001년도까지 청소자립도 100%달성을 목표로 추진토록 함에 있어 현재 판매하는 봉투 가격은 '95. 1. 1종량제 시행 관련 조례제정시 청소자립도 7%에서 50%수준으로 현실화한 가격이며, 종량제 시행후 수수료 수입이 많아진것이 아니고 종량제 시행전 시민이 부담한 청소수수료가 낮게 책정되었다고 봐야 할것입니다.

앞으로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시민 스스로가 쓰레기발생량을 최대한 감축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ㅇ 시민들이 분리해 놓은 쓰레기를 분리 수거하지 않는 이유와 이에 대한 책임 소재는

- 이 사항은 제10회 임시회때에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종량제 시행과 동시에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재활용품 수거 차량을 별도 운행하지 못하고 청소차량으로 운행함에 따라 재활용품이 일부 혼합수거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수거차량 확보와 재활용품 배출일 조절등으로 '96년도부터 수거 체계를 전면 개선할 계획으로 지난 10월부터 신평2동을 시범동으로 선정 실시중(재활용품 배출:주3회 →주1회)에 있으며, 각종 기회교육과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완벽한 분리 배출이 되도록 계도하고 분리수거 확행으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주택사업소장 박노궁입니다.

- 존경하는 이수근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박영환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인의, 형곡, 도량, 선산 교리의 시영아파트 건립 및 미분양 상가에 대한 대책과 송정시영아파트 건립, 분양내역에 대하여 질문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선 시영상가 건축현황을 말씀드리면
 - 형곡 시영상가는 '92년 11월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299평에 8개 점포를 조성하였고,
 - 인의 시영상가도 '92년 11월에 지하 1층, 지상 1층, 연건평 101평에 5개 점포와
 - 선산교리 시영상가는 '92. 3월에 지상 1층 연건평 51평에 4개 점포이며,
 - 도량상가는 '95년 3월에 2개동중 A동 상가는 지하 1층, 지상 1층, 연건평 255평에 17개 점포와 B동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481평에 25개 점포를 조성하여
 - 총 4개 지구에 연건평 1,187평에 59개 점포를 건축하였습니다.

◦ 시영상가 분양실적은

- 형곡상가는 8개 점포중 3개 점포가 분양되었고 5개 점포는 미분양이고,
- 인의상가는 5개 점포중 3개 점포가 분양되고 2개 점포가 미분양이며,
- 선산교리 상가도 4개점포중 2개점포는 분양되었고 2개점포는 미분양이며
- 도량상가는 42개 점포중 38개 점포는 분양되고 4개 점포가 미분양으로
- 총 59개 점포중 46개 점포가 분양되고 13개 점포가 미분양 상태로
있습니다.

◦ 미분양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금까지 미분양 상가를 분양코자 수차례의 분양공고와 홍보활동을 하여
왔으나, 이는 건축이후 예기치 못한 부동산 경기침체로 투자심리 위축과
- 감정가에 의한 분양가 산정으로 매매가의 조정이 곤란하여 분양에 애로가 있었고,
- 주변에 민간 임대상가의 형성으로 인하여 형곡, 인의, 선산 교리 상가의 분양은
실적이 저조하나 도량상가는 계속 상담중이므로 분양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앞으로 대책은 부동산 경기 회복이 계속 불투명할 것이 확실시 되면 임대료
전환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미분양된 13개 점포의 예정가격이 705백만원이나 이는 이익금의 일부로 추가
부담금 발생은 없으며, 앞으로 계속 홍보하여 분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송정시영아파트 건축개요와 분양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치는 송정동 38번지에 대지면적 2,965평이며, 건축연면적은 7,703평으로 건설규모는 2개동에 공급면적 23.21평형 300세대로 지하 1층, 지상 15층으로 건축중에 있습니다
- 부대시설은 관리시설 1동 114평과 상가 1동에 64평, 지하주차장 및 대피소 995평 입니다.
- 사업기간은 '94. 9. 1 착공하여 '96. 5월말경 완공예정으로 총사업비는 16,210 백만원 입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과 분양가격은 대지지분은 9.45평이고, 주택은 23.21평형으로 전용면적 18.13평과 주거공용 5.08평, 기타 공용 0.38평, 지하층 초과면적 1.87평으로 계약면적은 25.46평이 되겠습니다.
- 세대당 분양가격은 1층은 51,106천원이고 2층과 15층은 53,081천원이며 3~14층까지는 53,400천원으로 세대당 국민주택융자금이 12,000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분양실적은 '95. 8월부터 현재까지 총 300세대중 173세대 (58 %)를 분양하였으며 총공정은 55% 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 지구별 아파트 대지면적, 평당 분양가, 건축비, 건축년도 내역

지 구 별	건축년도	대 지 면 적 (평)	평당건축비 (천 원)	평당분양가 (천 원)
형 곡	'90. 12 ~ '92. 12	4,128	1,247	1,650
인 의	'90. 12 ~ '92. 10	3,953	1,202	1,590
도 량	'92. 1 ~ '95. 3	8,411	1,270	1,680
교 리	~ '92. 3	1,746	1,180	1,430
송 정	'94. 9 ~ '96. 5	2,965	1,660	2,085

市政質問에 대한 答辯

□ 질문자 : 김 병 주 의원

- 지산농로 2차선 확포장
- 도시계획상 도로의 용도변경과
용지 보상문제
- 국유지 주차장부지로 활용
방안에 관한건

□ 총무국장 김정욱입니다.

□ 지산동사무소 신축부지 뒤 국유지를 민원인 주차장으로 활용할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산동사무소 신축부지뒤편 공지는 당초 853-12번지 에서 분할되어 853-141의 지번이 부여되고 면적은 1,017㎡ (307평)입니다.

동 지번중 일부는 현재 구거로 활용되고 일부는 인접 주민이 점.사용하고 있으며 잔여부지 약150여 평이 공지로 되어있습니다

본 공지에 대하여 여타 활용의 필요가 있을때 까지 용도변경없이 원상태로 동사무소 민원인 전용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김 병 주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용지보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문 사항중 두번째 질문 사항인 지산 국민학교 앞에서 지산 2 동간 도시계획 시설상 소도로가 언제 금오여고 운동장으로 용도변경 되었는지와 지산 1 동 국도 33호선 삼거리옆 로타리용지 보상시기에 대하여

- 소도로가 학교용지로 편입된 시기는 1984. 9. 7일자로 시설변경 결정 되었으며 변경 사유로는 당시 자녀들의 교육열에 불타는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시설의 부족으로 타지역으로 전출되는 학생을 방지하고 나라의 꿈나무를 키어줄 수 있는 인문계학교 육성을 위하여 도로부지 일부를 금오 여자고등학교 시설인 운동장으로 용도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 3호광장은 '91. 8. 12 지정된 미관광장으로 현재 추진중인 대로 1류 2호선 도로가 4차선으로 확, 포장이 완료된 후 용지보상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매입코자 하며
- 본 광장은 미관광장이므로 매입 후 개발은 도시계획 시설에 맞는 휴식공간으로 개발, 많은 시민이 즐길 수 있도록 조성 하겠습니다.

□ 김 병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 지산동에서 대평으로가는 간선 농로가 현재는 단선이므로 이를 2차선으로 확장 주민 통행 불편을 덜어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지산동 샛강에서 대평마을로 가는 농로는 현재 연장 1,800M이며 폭은 3~8M로서 차량 교행이 어려우며
- 총연장 1,800M 폭 8M로 확장할시 총사업비는 500백만원 (보상비 200, 사업비 300)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의 농로 폭에서 10개소에 대피소를 설치할 경우 100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이므로
- 앞으로 차량이 교행할 수 있는 대피소 설치와 완전 2차선 확장 방안을 검토 차량통행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市政質問에 대한 答辯

☐ 질문자 : 강명수 의원

☐ 고아 도시계획에 관한건

□ 강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 입구에서 오로리앞 도로가 높게 시공된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 및 고아도시계획 수립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농공단지 입구에서 오로리 앞 도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 도로는 국도 33호선(고성 ~ 선산선)으로 유지관리를 건설교통부 소속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따라서 확포장 공사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였습니다.
- 본 도로가 차량 통행증대로 교통 체증이 유발되어 지역발전 및 교통체증을 해소코자 시공한 국가사업이므로 도로선형 및 종횡단 구배는 도로구조에 맞추어 시공 하였으리라 생각되며 舊 도로에 비하여 높게 시공 되었다는 400m 구간은 당초 계획보다 40cm ~ 70cm 낮게 시공되었습니다.
- 국도와 연결되는 도시계획 도로(L = 100m, B = 15m)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키 위하여 '96년도 당초 예산에 사업비 10억을 요구하였으니 본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 다음은 고아 도시계획 수립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아 도시계획 수립은 수립당시 2차례의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거쳐 계획인구 1만5천명이 거주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배분하여 94.1.5 최초로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된 지역으로 도시계획 구역내 상업지역은 교통의 혼잡을 최소화 하기위하여 가급적 주거 밀집지역을 피하여 지정 하였으며, 가로망 계획은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가장 적합하게 결정 고시 되었으며 금번 도시기본계획수립에 포함될 내용은 아닙니다. 고아 농공단지 저습답 및 이레리 농지의 용도지역 변경은 금년 제1 0회 임시회의시 도시 기본계획 변경 내용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본 업무의 특수성을감안, 공청회 개최전 대외에 누설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하여 공청회전까지 어느 지역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밝히지 못한점을 양해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 명 수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市政質問에 대한 答辯

☐ 질문자 : 한 상 일 의원

☐ 입찰에 대한 내부제도

☐ 금오산 진입로 가로수 개선에
대하여

□ 총무국장 김정욱입니다.

□ 도시건설위원회 한상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입찰에 대한 내부제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은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이며, 제조·구매는 2천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시에서는 벌써부터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관내에 해당업종에 해당되는 업체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지역업체와 계약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전국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에 부하되 도내 업체를 공동 도급으로 참여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도급으로 발주시에는 주계약자가 공동 도급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후에는 공동도급자와 협의하여 투자비율을 결정토록 되어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주 도급자로 하여금 관내업체를 공동도급자로 참여토록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업체가 우리시에서 발주되는 모든 공사에 참여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입찰에 대한 내부제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치 않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 한상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오산 진입로 가로수 피해 예방을 위한 가로수 개체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건 가로수는 1962년 선산군 구미면 당시 식재한 이태리포플러로서 금오산진입로 우측 편도구간에 105본을 식재하여 필요시마다 단간전정을 실시하는등 관리를 해 오던중 지난 '87년 8월 태풍 '셀마' 의 내습으로 5본이 도복되었고 이때 피해방지 대책으로 주택지와 연접한 가로수 67본을 제거하고 농경지와 연접한 가로수33본은 존치하였으나 현재는 주택과 상가등이 건립된 반면에 가로수는 날로 성장하여 또다시 주민생활에 보이지 않는 위험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 금년 9 월경에 일부 주민들로부터 전정 요구가 있어 수목의 수액정지기에 전정을 계획한바 있습니다만, 전정으로는 장기적인 대책이 될수 없을 뿐만아니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이태리포플러 나무는 과거에 경제수종으로 식재가 권장되었던것과는 달리 관상가치가 강조되는 현실을 고려할때 더이상 존치 할 가치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 또한 시민 주거생활에 다소라도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감안할때 금년 12 월중에 이 나무를 제거한후 내년 춘기에 현재 금오산진입로 우측에 식재되어있는 가로수와 연계하여 느티나무를 식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市政質問에 대한 答辯

☐ 질 문 자 : 임 정 만 의원

☐ 구미신문인협회광고 불법영업

☐ 관변단체 보조 및 지원 운영에
관하여

□ 기획실장 김성동 입니다.

□ 임경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변단체 보조금 지원현황과 지원단체의 사무실 임대 및 '96년도 지원계획과 예산 감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과 '95년의 새마을운동 단체와, 바르게살기 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조직 구성을 말씀 드리면

○ 새마을운동 단체는 시군 통합전인 '94년 구미시는 시지회 산하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와 새마을 부녀협의회가 동마다 각각 구성되어 있었고 직장새마을 협의회 1단체, 새마을문고 10개소, 새마을금고 31개소 등 총 83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 역시 군 지역에도 군지회 산하에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와 새마을 부녀회가 읍·면 마다 각각 구성되어 있었고, 새마을문고 31개소, 새마을금고 14개소 등 총 62개 단체로 구성되어 새마을단체는 2개 시·군에 145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 이들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연간 지원되는 정액보조와 시기별로 추진하는 중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비는 풀보조로 지원해 왔습니다.

먼저, '94 지원현황을 말씀 드리면 정액보조는 시·군지회에 각각 년 35,600천원 읍·면·동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에 년 각각 1,200천원씩 지원되어 이는 사무실유지비, 사무용품비 및 인건비와 자체일반 사업비로 사용 되었으며,

- 풀보조로 지원된 것은, 구미시 지회는 새마을 활력화사업 10,000천원 · 상설우유팩 수집교환 및 알뜰마당 운영에 10,500천원 등 20,500천원을 지원 하였고 선산군은 도농간 자매결연 행사 2,100천원 · 새마을활력화 사업에 4,500천원 등 6,600천원을 지원하여 정액보조와 풀보조를 합하면 시지회 104,100천원 군지회 61,400천원 총 165,500천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 '95 시군 통합 이후 새마을 협의회 구성은 2개 지회를 1개 지회로 통합 하였고,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와 새마을 부녀회는 2개 동이 증설 되어 4개 단체가 증가 되었으며, 새마을 금고는 1개소가 증가되어 시지회 산하 5개 조직인 총 149개 단체로 구성되었습니다.

○ 예산지원은 '94년 정부의 관변단체 예산지원 감축 방침에 따라 시지회는 정액보조가 '94년 35,600천원의 50%인 년 17,800천원 읍·면·동의 새마을 협의회와 새마을 부녀회에도 년 1,200천원에서 600천원으로 감액 지원되어 '94년은 138,400천원을 지원 하였지만 '95년에는 지난해의 50%에도 못 미치는 53,800천원이 정액보조로 지원 되었고, 지금까지 풀보조 사업비는 내고장환경 가꾸기 2,000천원 하계방역 봉사활동에 2,000천원 등 4,000천원이 지원 되어 금년 총 지원액이 57,800천원 입니다.

○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의 구성 조직은

'94년은 시·군에 각각 시군 지회, 읍·면·동 협의회 28개 단체

총 30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가 금년에 1개 지회로 통합됨과 동시에 2개동이 증설됨에 따라 동협의회 2개 단체가 증가 되어 현재 31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94년도에 시지회는 정액보조 15,400천원과 각동 협의회에 각 1,700천원씩 해서 총 49,400천원과 풀보조비로 환경보호 녹색운동 3,000천원 시민건강걷기대회 2,000천원 등 5,000천원으로 총 54,400천원이 지원되었고 군지회에 정액보조 15,400천원과 각 읍면 협의회에 각 1,700천원씩 총 29,000천원과 회원 특별교육 사업비 1,200천원을 풀보조비로 지원하여 총 30,20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95년은 통합지회가 되어 1개 지회에 정액보조 15,400천원과 읍면동 협의회 각 1,700천원씩 해서 정액보조 총 66,400천원과 풀보조비로 단계백일장개최 행사비 5,000천원을 지원해서 총 71,400 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한국자유총연맹은 통합전에는 시·군 각각 1단체로 운영되다가 통합되어 1개 단체로 구성되어 정액보조 년 12,100천원 외에는 지원 사항이 없습니다.

○ 아울러 위 3개 단체 사무실 임대 현황을 말씀드리면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는 오성예식장 인근의 개인건물 15평을 5,000천원에 임대 사용하고 있고, 한국자유총연맹 지부는 시민운동장 내 사무실 38평을 년 1,400천원에 임차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 지회는 현재 시립도서관 건물 17평을 무상 사용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청사내 사회단체 사용 사무실 정리지침 ('94. 3. 25. 도회계 13330 - 289)에 의하여 내년 부터는 유상 임대토록 조치 하겠습니다.

○ '96년도 위의 단체들에 대한 예산지원 및 감축방침은

정부의 민간단체보조 감액방침에 의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3단체에 대한 정액보조는 전면 중단할 방침이며, 건전한

시민운동을 위한 정신교육 · 애향운동 · 환경 및 자연보존 등
사업의 성격에 따라 민간조직이 활동할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만을
지원 할 방침 입니다.

이상으로 관변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과 지원감축 방침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국장 김정욱 입니다.

□ 사회산업위원회 임경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물이라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 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것으로서 간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난 '95. 3. 15일 옥내 광고전단 배포 규제 조치 건의에 대하여 내무부장관 회신내용에서 『 일간신문속에 삽입된 광고전단은 옥외에 표시되는 광고물이 아니므로 옥외 광고물로 볼 수 없다 』 라고 회신되어 왔습니다.

○ 따라서 일간신문속에 삽입되는 삽지물은 현행법으로는 제재할수 없으며 현재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된 신문지국에 대하여 삽지물 취급시 '94년부터 6개월에 1회씩 신고토록하여 신고금액에 대한 부가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미등록된 사업자와 삽지물 취급 미신고자에 대하여는 세무서에서 조사 처리될 것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